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연료전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”를 “연료전지로서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수전해설비로서 그 설비의 정격운전 상태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(섭씨 0도,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량 이하인 것

3. 수소추출설비로서 그 설비의 정격운전 상태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량 이하인 것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3항제2호·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제3항제2호·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36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.

[별표 1의2]

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수소용품(제2조제3항 관련)

- 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
- 2. 셀 또는 스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조·사용하는 것
- 3.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조·사용하는 것으로서 출력전압이 DC 10V 이하인 연료전지 또는 공급전압이 DC 20V 이하인 수전해설비
- 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정의) ①·②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2조제8호에서 “연료전	③ -----
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	-----
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	-----
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-----
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.	-----.
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것</u>
1. 연료전지(「자동차관리법」	1. 연료전지로서 -----
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	-----
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	-----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것	
가. 연료소비량이 232.6 킬로	가. -----
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	-----
그 부대설비	-----
나.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	나. -----
비	-

2. <u>수전해설비</u>	2. <u>수전해설비로서 그 설비의 정격운전 상태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(섭씨 0도,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량 이하인 것</u>			<u>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조·사용하는 것</u>
3. <u>수소추출설비</u>	3. <u>수소추출설비로서 그 설비의 정격운전 상태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량 이하인 것</u>			3. <u>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조·사용하는 것으로서 출력 전압이 DC 10V 이하인 연료 전지 또는 공급전압이 DC 20V 이하인 수전해설비</u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			4. <u>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</u>
<u><신 설></u>	<u>[별표 1의2]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수소용품(제2조제3항 관련)</u> 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 2. 셀 또는 스택의 성능을 평가	<u><신 설></u>		<u>부 칙</u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3항제2호·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제3항제2호·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36조에 따른 검

	<u>사신청서를 제출한 수전해설비</u> <u>와 수소추출설비는 개정규정에</u> <u>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</u> <u>용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.</u>
--	--